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권영진 · 이만희
안철수 · 윤한홍 · 서천호
이종배 · 김재섭 · 김용태
이상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 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 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)를 각각 <u>2026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 면제한다.	제19조의2(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9년</u> <u>12월 31일</u> -----.